

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7. 7. 유영화 의원의 2인
- 나. 회부일자 : 2009. 7. 9.
- 다. 상정일자 : 2009. 7. 13.(제1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(제안설명자 : 유영화 의원)

1. 제안이유

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에 대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보관 사용방법을 추가하고 직인의 종류 중 각 상임위원장으로 통합되어 있는 조례를 각 상임위원장별로 세분화하여 공인의 종류, 등록, 날인, 관리에 관하여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2항제2호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을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,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,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,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분 한다. (제2조제2항제2호)(개정)
- 제2조2항2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인은 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단서규정을 둠(제2조제4항)(신설)
-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규정함 (제5조제2항)(신설)
- 공인을 재교부 및 「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하고를」 폐기하고자 할 경우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에게 보고를 의회의장에게 보고로 조정 (제8조제2항)(개정)

- 공인의 필요한 이력사항의 정리를 위하여 공인대장을 비치 보존
(제10조)(신설)
- 매년기준일의 인영의 보존관리점검을 위하여 인영부등을 관리
(제11조)(신설)
- 공인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새로운
공인의 사고보고 조항의 마련(제12조)(신설)
- 공인의 관수자의 지정 (제13조)(신설)
- 공인의 관수방법의 규정(제14조)(신설)
- 공인의 날인방법 및 원칙을 규정(제15조)(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상학)

-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영화 의원외 2인이
2009. 7. 7일 발의하여 의장이 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함에 따라
심사하게 되었습니다.
제천시의회 공인조례는 1995년 1월 3일 조례 제2호로 제정되었고
2001년 4월 3일 개정된 제천시의회 공인조례에 대하여 사무처리상
공인으로 인하여 문서효력상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
하고 공인의 사용방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
- 현 조례상 제2항제2호의 각 상임위원장으로 통합되어 있는 공인을
각 상임위원장별로 세분화하여 공인의 관리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
하였으며 위원장의 공인은 의회 내 발신문서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
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공인의 재교부 및 사고와 폐기시의
방법을 규정하였고
- 공인의 날인에 대하여 공인의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
하여 날인하고 공인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공신력 확보에 중점을

두었으며 전자 이미지 공인의 경우도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심사 후
날인토록 하여 공인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법적 결격 사항이 없는 적합한 개정이라고
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5. 소 수 의 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내 용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1.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